시흥 거모 아테라 (시흥거모 A-6BL)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지구 내 A-6블록 720세대

▌공급대상 : A-6블록 720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480세대 [전용면적 55㎡ 318세대, 59㎡ 162세대]

■ **시흥 거모 아테라** (거모지구 A-6블록) 분양 상담 전화(1661-5596)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청약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부적격 처리 혹은 불이익 부과)되며,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자격상향지원 등)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은 LH와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서, 청약신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하여 진행하나, 청약 등과 관련한 일체의 문의는 시흥 거모 아테라 대표번호(1661-5596)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신혼희망타운의 각 유형(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세대 1인 및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사업주체에서는 계약자의 자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주택의 첫 중도금 납기를 감안하여 금융기관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협약체결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자에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 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추진될 경우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자후불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Ⅶ.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11.05.)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단 지 주 요 정 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비규제지역	수도권 거주자 (경쟁시 시흥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공고	접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현장)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신규신청자)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주택형(타입) 배정결과 발표	본청약 신청포기				
일정	'26.11.06.(금)	'26.11.16.(월) 10:00 ~'26.11.17.(화) 17:00	'26.11.19.(목) 14:00 이후	'26.11.20.(금) 10:00~17:00	'26.11.26.(목) 10:00 ~'26.11.27.(금) 17:00	'26.12.08.(화) (14:00 이후)	'26.12.11.(금)~12.17.(목) (10:00 ~ 16:00 주말포함)	'27.03.11.(목)~03.14.(일) (10:00 ~ 16:00)

알 려 드 립 니 다

■ 금회 공급하는 시흥거모지구 내 A-6블록 **720세대 중 480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40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시흥거모 A-6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의 동·호수는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06.(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820015**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시흥 거모 아테라 홈페이지(http://arterashgm.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흥거모 A-6블록은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단지입니다.

■ **[중요] 청약신청은 반드시 블록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타입)별(055.0000A, 059.0000A, 059.0000B, 059.0000C)별로 신청해야 하며,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 등으로 인해 동·호별 형태·면적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타입)이라도 AL, AH으로 세부평형이 구분됩니다. (각 주택형(타입)별 세부평형 및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 신청한 주택형(타입)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의 경우 선호순위 신청 후 배정된 주택형(타입)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

■ 주택전시관 관람 안내

- 주택전시관 개관은 **2026.11.06.(금)** 10:00입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 시흥거모 A-6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전시관을 **'26.11.06.(금) ~ 11.08.(일) 3일간** 공개 합니다.
-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은 55AL, 59BL타입이 설치되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55AH, 59AL, 59AH, 59BH, 59CL, 59CH타입은 반드시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울 경우에도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팸플릿을 참고)

*** 주택전시관 관람 일정**

대 상	구 분	방문 일정	주 소	기 타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청약 당첨자만 관람 (일반고객 관람 불가)	'26.11.06.(금) ~ 11.08.(일) (10:00~17:00)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24-2	* 기간 내 주말, 공휴일 관람 가능 *관람 및 상담 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 ☎1661-5596**
일반개방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일반관람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26.11.08.(일) ~ 11.18.(수) (10:00~17:00)		

- **청약 전 반드시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실제 건립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견본 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arterashgm.c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주택전시관 정식 오픈 : 2026.11.06.(금) 10:00)**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 본 주택의 명칭은 "시흥 거모 아테라"입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기준은 10페이지 Ⅱ. 신청기준(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및 15페이지 Ⅲ.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시흥시 1년 이상(2025.11.06. 이전) 거주하는 신청자가 시흥시 1년 미만(2025.11.07. 이후)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시흥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25.11.06.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2) '25.11.06.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은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주택법」제64조, 「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 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과 납입인정금액,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총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고	접 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신규신청자)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주택형(타입) 배정결과 발표	본청약 신청포기				
'26.11.06.(금)	'26.11.16.(월) 10:00 ~'26.11.17.(화) 17:00	'26.11.19.(목) 14:00 이후	'26.11.20.(금) 10:00~17:00	'26.11.26.(목) 10:00 ~'26.11.27.(금) 17:00	'26.12.08.(화) (14:00 이후)	'26.12.11.(금)~12.17.(목) (10:00 ~ 16:00 주말포함)	'27.03.11.(목)~03.14.(일) (10:00 ~ 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접수기간 중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주택전시관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24-2 ☎ 1661-5596**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선호 주택형(타입)이 아닐 경우 본청약 신청 포기 기간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포기(인증 필요)하여야 하며, 포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본청약 신청접수 및 청약통장 사용처리 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대상 인지세 납부세액 15만원(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공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는 공사 「취업규칙」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선착순 수의계약 또는 명의변경으로 인한 공사 공급 부동산의 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민법」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개 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사업주체가 **대출결과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대출기간 (년)	담보인정비율 70%			담보인정비율 6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5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4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30% 실행시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4	40%	30%	20%	35%	25%	15%	30%	20%	10%	25%	15%	10%	20%	15%	10%
19	30%	20%	10%	25%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 담보인정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됩니다.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정산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시흥거모지구 내 A-6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I 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지구 내 A-6블록

■ 공급대상 : 총 720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지상 12층 ~ 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60㎡ 이하 480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세부 평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합계	금회공급 공공분양		차후공급 장기임대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 계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A-6 블록	합 계									720	124	356	240	-	17	'29.09. (예정)
	055.0000A	55AL	55.6600	23.3870	79.0470	11.3481	42.3524	132.7475	42.8055	477	41	277	159	19	8	
		55AH	55.9800	23.5214	79.5014	11.4134	42.5959	133.5107	43.0516					25	2	
	059.0000A	59AL	59.6100	25.0467	84.6567	12.1534	45.3580	142.1681	45.8433	80	27	26	27	15	1	
		59AH	59.9100	25.1727	85.0827	12.2146	45.5863	142.8836	46.0740					25	1	
	059.0000B	59BL	59.5800	25.0341	84.6141	12.1473	45.3352	142.0966	45.8202	74	26	24	24	15	1	
		59BH	59.8100	25.1307	84.9407	12.1942	45.5102	142.6451	45.9971					25	1	
	059.0000C	59CL	59.5000	25.0005	84.5005	12.1310	45.2743	141.9058	45.7587	89	30	29	30	15	1	
		59CH	59.7700	25.1139	84.8839	12.1861	45.4797	142.5497	45.9664					25	2	

※ [중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모형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요] 청약신청은 반드시 블록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타입)별(055.0000A, 059.0000A, 059.0000B, 059.0000C)별로 신청해야 하며,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 등으로 인해 동·호별 형태·면적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타입)이라도 AL, AH으로 세부평형이 구분됩니다. (각 주택형(타입)별 세부평형 및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 신청한 주택형(타입)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의 경우 선호순위 신청 후 배정된 주택형(타입)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타입)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세부평형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타입 선택 기간까지 제출 완료)**

※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주택타입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같은 주택형이라도 주택면적 차이로 인해 타입별 주택가격은 상이합니다.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대지지분의 증감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계약면적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산하는 경우에도 정산금에는 별도의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9년 09월입니다. 단, 사업지구 내 택지조성공사 등 기반시설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입주 일정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수분양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입주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시행하는 사업[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민간사업자 : 금호건설(주), 한신공영(주), 리바이브개발(주)) / 시공업체 : 금호건설(주), 한신공영(주), 리바이브개발(주)]입니다.

※ 본 주택은 LH와 금호건설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직접정산방식(도급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금호건설컨소시엄은 시행사 겸 시공사이며 향후 분양계약 및 소유권보존 등기는 LH 단독명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 사전청약당첨자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단위 : 원)

주택형	타입	층별	주택가격	계약금 (5%)	중도금 (2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028.06.10.	입주시	
055.0000A	55AL	1층	405,530,000	20,276,500	81,106,000	249,147,500	55,000,000
		2층	409,840,000	20,492,000	81,968,000	252,380,000	55,000,000
		3층	418,470,000	20,923,500	83,694,000	258,852,500	55,000,000
		4층	427,100,000	21,355,000	85,420,000	265,325,000	55,000,000
		5층~최상층	431,420,000	21,571,000	86,284,000	268,565,000	55,000,000
	55AH	1층	407,860,000	20,393,000	81,572,000	250,895,000	55,000,000
		2층	412,200,000	20,610,000	82,440,000	254,150,000	55,000,000
		3층	420,880,000	21,044,000	84,176,000	260,660,000	55,000,000
		4층	429,560,000	21,478,000	85,912,000	267,170,000	55,000,000
		5층~최상층	433,900,000	21,695,000	86,780,000	270,425,000	55,000,000
059.0000A	59AL	1층	434,310,000	21,715,500	86,862,000	270,732,500	55,000,000
		2층	438,930,000	21,946,500	87,786,000	274,197,500	55,000,000
		3층	448,170,000	22,408,500	89,634,000	281,127,500	55,000,000
		4층	457,410,000	22,870,500	91,482,000	288,057,500	55,000,000
		5층~최상층	462,040,000	23,102,000	92,408,000	291,530,000	55,000,000
	59AH	1층	436,490,000	21,824,500	87,298,000	272,367,500	55,000,000
		2층	441,140,000	22,057,000	88,228,000	275,855,000	55,000,000
		3층	450,420,000	22,521,000	90,084,000	282,815,000	55,000,000
		4층	459,710,000	22,985,500	91,942,000	289,782,500	55,000,000
		5층~최상층	464,360,000	23,218,000	92,872,000	293,270,000	55,000,000
059.0000B	59BL	1층	434,100,000	21,705,000	86,820,000	270,575,000	55,000,000
		2층	438,710,000	21,935,500	87,742,000	274,032,500	55,000,000
		3층	447,950,000	22,397,500	89,590,000	280,962,500	55,000,000
		4층	457,190,000	22,859,500	91,438,000	287,892,500	55,000,000
		5층~최상층	461,810,000	23,090,500	92,362,000	291,357,500	55,000,000
	59BH	1층	435,770,000	21,788,500	87,154,000	271,827,500	55,000,000
		2층	440,410,000	22,020,500	88,082,000	275,307,500	55,000,000
		3층	449,680,000	22,484,000	89,936,000	282,260,000	55,000,000
		4층	458,950,000	22,947,500	91,790,000	289,212,500	55,000,000
		5층~최상층	463,590,000	23,179,500	92,718,000	292,692,500	55,000,000
059.0000C	59CL	1층	433,510,000	21,675,500	86,702,000	270,132,500	55,000,000
		2층	438,130,000	21,906,500	87,626,000	273,597,500	55,000,000
		3층	447,350,000	22,367,500	89,470,000	280,512,500	55,000,000
		4층	456,570,000	22,828,500	91,314,000	287,427,500	55,000,000
		5층 이상	461,190,000	23,059,500	92,238,000	290,892,500	55,000,000
	59CH	1층	435,480,000	21,774,000	87,096,000	271,610,000	55,000,000
		2층	440,110,000	22,005,500	88,022,000	275,082,500	55,000,000
		3층	449,380,000	22,469,000	89,876,000	282,035,000	55,000,000
		4층	458,640,000	22,932,000	91,728,000	288,980,000	55,000,000
		5층~최상층	463,280,000	23,164,000	92,656,000	292,460,000	55,000,000

■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신규신청자)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단위 : 원)

주택형	타입	층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1회차(10%)	2회차(10%)		
				계약시	2027.09.29.	2028.06.10	입주시	
055.0000A	55AL	1층	405,530,000	40,553,000	40,553,000	40,553,000	228,871,000	55,000,000
		2층	409,840,000	40,984,000	40,984,000	40,984,000	231,888,000	55,000,000
		3층	418,470,000	41,847,000	41,847,000	41,847,000	237,929,000	55,000,000
		4층	427,100,000	42,710,000	42,710,000	42,710,000	243,970,000	55,000,000
		5층~최상층	431,420,000	43,142,000	43,142,000	43,142,000	246,994,000	55,000,000
	55AH	1층	407,860,000	40,786,000	40,786,000	40,786,000	230,502,000	55,000,000
		2층	412,200,000	41,220,000	41,220,000	41,220,000	233,540,000	55,000,000
		3층	420,880,000	42,088,000	42,088,000	42,088,000	239,616,000	55,000,000
		4층	429,560,000	42,956,000	42,956,000	42,956,000	245,692,000	55,000,000
		5층~최상층	433,90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248,730,000	55,000,000
059.0000A	59AL	1층	434,310,000	43,431,000	43,431,000	43,431,000	249,017,000	55,000,000
		2층	438,930,000	43,893,000	43,893,000	43,893,000	252,251,000	55,000,000
		3층	448,170,000	44,817,000	44,817,000	44,817,000	258,719,000	55,000,000
		4층	457,410,000	45,741,000	45,741,000	45,741,000	265,187,000	55,000,000
		5층~최상층	462,040,000	46,204,000	46,204,000	46,204,000	268,428,000	55,000,000
	59AH	1층	436,490,000	43,649,000	43,649,000	43,649,000	250,543,000	55,000,000
		2층	441,140,000	44,114,000	44,114,000	44,114,000	253,798,000	55,000,000
		3층	450,420,000	45,042,000	45,042,000	45,042,000	260,294,000	55,000,000
		4층	459,710,000	45,971,000	45,971,000	45,971,000	266,797,000	55,000,000
		5층~최상층	464,360,000	46,436,000	46,436,000	46,436,000	270,052,000	55,000,000
059.0000B	59BL	1층	434,100,000	43,410,000	43,410,000	43,410,000	248,870,000	55,000,000
		2층	438,710,000	43,871,000	43,871,000	43,871,000	252,097,000	55,000,000
		3층	447,950,000	44,795,000	44,795,000	44,795,000	258,565,000	55,000,000
		4층	457,190,000	45,719,000	45,719,000	45,719,000	265,033,000	55,000,000
		5층~최상층	461,810,000	46,181,000	46,181,000	46,181,000	268,267,000	55,000,000
	59BH	1층	435,770,000	43,577,000	43,577,000	43,577,000	250,039,000	55,000,000
		2층	440,410,000	44,041,000	44,041,000	44,041,000	253,287,000	55,000,000
		3층	449,680,000	44,968,000	44,968,000	44,968,000	259,776,000	55,000,000
		4층	458,950,000	45,895,000	45,895,000	45,895,000	266,265,000	55,000,000
		5층~최상층	463,590,000	46,359,000	46,359,000	46,359,000	269,513,000	55,000,000
059.0000C	59CL	1층	433,510,000	43,351,000	43,351,000	43,351,000	248,457,000	55,000,000
		2층	438,130,000	43,813,000	43,813,000	43,813,000	251,691,000	55,000,000
		3층	447,350,000	44,735,000	44,735,000	44,735,000	258,145,000	55,000,000
		4층	456,570,000	45,657,000	45,657,000	45,657,000	264,599,000	55,000,000
		5층~최상층	461,190,000	46,119,000	46,119,000	46,119,000	267,833,000	55,000,000
	59CH	1층	435,480,000	43,548,000	43,548,000	43,548,000	249,836,000	55,000,000
		2층	440,110,000	44,011,000	44,011,000	44,011,000	253,077,000	55,000,000
		3층	449,380,000	44,938,000	44,938,000	44,938,000	259,566,000	55,000,000
		4층	458,640,000	45,864,000	45,864,000	45,864,000	266,048,000	55,000,000
		5층~최상층	463,280,000	46,328,000	46,328,000	46,328,000	269,296,000	55,000,0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중요]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층별 등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으로 공급가격, 동·호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며,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본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 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부평형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55AL타입과 59BL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은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사업승인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대금 납부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 **사전청약당첨자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공급가격	계약금(20%)	잔금(80%)
			계약 체결시	입주 시
055.0000A	55AL	6,091,000	1,218,200	4,872,800
	55AH	6,083,000	1,216,600	4,866,400
059.0000A	59AL	6,471,000	1,294,200	5,176,800
	59AH	6,491,000	1,298,200	5,192,800
059.0000B	59BL	6,409,000	1,281,800	5,127,200
	59BH	6,420,000	1,284,000	5,136,000
059.0000C	59CL	3,142,000	628,400	2,513,600
	59CH	3,153,000	630,600	2,522,400

▪ **사전청약당첨자 외(신규신청자)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공급가격	계약금(20%)	잔금(80%)
			계약 체결시	입주 시
055.0000A	55AL	6,091,000	1,218,200	4,872,800
	55AH	6,083,000	1,216,600	4,866,400
059.0000A	59AL	6,471,000	1,294,200	5,176,800
	59AH	6,491,000	1,298,200	5,192,800
059.0000B	59BL	6,409,000	1,281,800	5,127,200
	59BH	6,420,000	1,284,000	5,136,000
059.0000C	59CL	3,142,000	628,400	2,513,600
	59CH	3,153,000	630,600	2,522,400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창호 변경 시 에너지효율등급 및 결로방지성능 기준에 적합한 동등 이상의 자재로 시공되며, 창호 사양변경으로 인한 세대 단열 저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 샤시,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마감 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안내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가구,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등)은 선택불가 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arterashgm.co.kr)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이 설치됩니다.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품목	옵션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20%) 계약시	잔금(80%) 입주지정일	비고
55A	일반형	선택 1	거실+침실1 (2대)	3,900,000	780,000	3,120,000	-
		선택 2	거실(2대)+침실1(3대)	5,300,000	1,060,000	4,240,000	거실특화 알파룸 통합형 선택시
		선택 3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4대)	6,600,000	1,320,000	5,280,000	-
		선택 4	거실(2대)+침실1+침실2(4대)	6,600,000	1,320,000	5,280,000	거실특화 알파룸 통합형 선택시
	고급형	선택 5	거실+침실1 (2대)	4,200,000	840,000	3,360,000	-
		선택 6	거실(2대)+침실1(3대)	5,700,000	1,140,000	4,560,000	거실특화 알파룸 통합형 선택시
		선택 7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4대)	7,100,000	1,420,000	5,680,000	-
		선택 8	거실(2대)+침실1+침실2(4대)	7,100,000	1,420,000	5,680,000	거실특화 알파룸 통합형 선택시
59A	일반형	선택 1	거실+침실1(2대)	4,000,000	800,000	3,200,000	-
		선택 2	거실(2대)+침실1(3대)	5,400,000	1,080,000	4,320,000	거실특화 침실2 통합형 선택시
		선택 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대)	6,700,000	1,340,000	5,360,000	-
		선택 4	거실(2대)+침실1+침실3 (4대)	6,700,000	1,340,000	5,360,000	거실특화 침실2 통합형 선택시
	고급형	선택 5	거실+침실1(2대)	4,300,000	860,000	3,440,000	-
		선택 6	거실(2대)+침실1(3대)	5,800,000	1,160,000	4,640,000	거실특화 침실2 통합형 선택시
		선택 7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대)	7,200,000	1,440,000	5,760,000	-
		선택 8	거실(2대)+침실1+침실3 (4대)	7,200,000	1,440,000	5,760,000	거실특화 침실2 통합형 선택시
59B	일반형	선택 1	거실+침실1 (2대)	4,000,000	800,000	3,200,000	-
		선택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대)	6,700,000	1,340,000	5,360,000	-
	고급형	선택 3	거실+침실1 (2대)	4,300,000	860,000	3,440,000	-
		선택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대)	7,200,000	1,440,000	5,760,000	-
59C	일반형	선택 1	거실+침실1(2대)	4,000,000	800,000	3,200,000	-
		선택 2	거실(2대)+침실1(3대)	5,400,000	1,080,000	4,320,000	거실특화 침실2 통합형 선택시
		선택 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대)	6,700,000	1,340,000	5,360,000	-
		선택 4	거실(2대)+침실1+침실3 (4대)	6,700,000	1,340,000	5,360,000	거실특화 침실2 통합형 선택시
	고급형	선택 5	거실+침실1(2대)	4,300,000	860,000	3,440,000	-
		선택 6	거실(2대)+침실1(3대)	5,800,000	1,160,000	4,640,000	거실특화 침실2 통합형 선택시
		선택 7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대)	7,300,000	1,460,000	5,840,000	-
		선택 8	거실(2대)+침실1+침실3 (4대)	7,300,000	1,460,000	5,840,000	거실특화 침실2 통합형 선택시

▪ 시스템에어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은 일반형/고급형(프리미엄) 2가지 제품으로 판매하며, 제품별 실내기 커버의 모양이 상이함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기실 내에 하향식 피난구 및 환기장치(전열교환기)가 복합 설치되므로, 실외기 배치 후 잔여 공간 부족으로 인한 추가 물품 적치(가구, 짐 등)는 피난장애에 해당하여 일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무선리모컨으로 제어하며, 실내기 1대당 무선리모컨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과 침실1에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상기 판매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20%) 계약시	잔금(80%) 입주지정일	비고
전기오븐 (LG)	일반형 (MZ385EBT1)	55㎡, 59㎡ 전타입	400,000	80,000	320,000	
	고급형 (MZ941CLCAT)		800,000	160,000	640,000	
전기쿡탑 (쿠쿠/LG)	일반형 3구 인덕션 (쿠쿠/CIRS-FL301FB-S)		400,000	80,000	320,000	
	고급형 3구 인덕션 (LG전자/BEI3WWQLBI)		1,300,000	260,000	1,040,000	
냉장고/ 김치냉장고 (LG)	LG Object(냉장/냉동+김치_4+3도어)+수납장		7,200,000	1,440,000	5,760,000	냉장고장 포함
	LG Object(냉장/냉동+김치_3도어)+수납장		6,100,000	1,220,000	4,880,000	

	LG Object(냉장/냉동_4도어)+홈카페장		5,300,000	1,060,000	4,240,000	
	LG Object(냉장/냉동_2도어)+홈카페장		4,900,000	980,000	3,920,000	
식기세척기 (LG)	일반형 14인용 (LG전자/DIE5PT)		1,200,000	240,000	960,000	
	고급형 14인용 (LG전자/DIE6PT)		1,600,000	320,000	1,280,000	
천장형 제습기 (드레스룸)	드레인 공사비 포함 (코스텔/CDD-600B)		800,000	160,000	640,000	드레스룸 특화 시

3)가구 및 마감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20%) 계약시	잔금(80%) 입주지정일	비고
현관중문		중문 3연동 도어(1FIX + 2DOOR), 신발장하부 간접조명	55㎡ 전타입	1,400,000	280,000	1,120,000	
			59㎡ 전타입	1,500,000	300,000	1,200,000	
바닥 특화	선택1	광폭강마루	55㎡ 전타입	400,000	80,000	320,000	
			59㎡ 전타입	500,000	100,000	400,000	
	선택2	SPC바닥재	55㎡ 전타입	2,200,000	440,000	1,760,000	
			59㎡ 전타입	2,300,000	460,000	1,840,000	
거실특화	선택1	거실, 침실2 or 알파룸 분리형+ 세라믹타일 아트월, 벽판넬마감, 픽처레일	55㎡ 전타입	4,800,000	960,000	3,840,000	
			59AL, 59AH 59CL, 59CH	5,000,000	1,000,000	4,000,000	
	선택2	거실, 침실2 or 알파룸 통합형+ 세라믹타일 아트월, 벽판넬마감, 픽처레일 ※통합시 알파룸 조명특화(직부등→다운라이트 변경)	55㎡ 전타입	4,700,000	940,000	3,760,000	
			59AL, 59AH 59CL, 59CH	4,900,000	980,000	3,920,000	
	선택3	세라믹타일 아트월, 벽판넬마감, 픽처레일	59BL, 59BH	5,500,000	1,100,000	4,400,000	
	선택4	세라믹타일 아트월, 벽판넬마감, 픽처레일, 복도 팬트리 (가구도어+시스템선반)	59BL, 59BH	5,500,000	1,100,000	4,400,000	
복도팬트리 특화		복도 팬트리 (가구도어+시스템 선반) ※ 거실특화 선택시 선택 불가	59BL, 59BH	500,000	100,000	400,000	
주방 마감재	선택1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하부 LED조명, 무선충전 매입콘센트	55㎡ 전타입	2,600,000	520,000	2,080,000	
			59AL, 59AH	2,800,000	560,000	2,240,000	
			59BL, 59BH	3,300,000	660,000	2,640,000	
			59CL, 59CH	3,600,000	720,000	2,880,000	
	선택2	세라믹타일+상부장 하부 LED조명, 무선충전 매입콘센트	55㎡ 전타입	6,400,000	1,280,000	5,120,000	
			59AL, 59AH	6,600,000	1,320,000	5,280,000	
			59BL, 59BH	7,000,000	1,400,000	5,600,000	
			59CL, 59CH	7,900,000	1,580,000	6,320,000	
주방 특화 (인덕션 필수선택)	선택1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 마감재 + 플랩장(매립형 상하부조명), 무선충전 매입콘센트, 주방 상판 하부 LED조명, 독립형 후드 ※인덕션 필수선택	55㎡ 전타입	5,900,000	1,180,000	4,720,000	
			59AL	6,700,000	1,340,000	5,360,000	
			59AH	6,500,000	1,300,000	5,200,000	
			59BL	7,200,000	1,440,000	5,760,000	
			59BH	7,500,000	1,500,000	6,000,000	
			59CL, 59CH	7,300,000	1,460,000	5,840,000	
	선택2	세라믹타일벽/상판 마감재+플랩장(매립형 상하부조명), 무선충전 매입콘센트, 주방 상판 하부 LED조명, 독립형 후드 ※인덕션 필수선택	55㎡ 전타입	10,700,000	2,140,000	8,560,000	
			59AL, 59AH, 59BL	11,200,000	2,240,000	8,960,000	
			59BH	11,600,000	2,320,000	9,280,000	
			59CL, 59CH	11,300,000	2,260,000	9,040,000	
	선택3	엔지니어드스톤 대형 아일랜드+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마감재 + 플랩장(매립형 상하부조명), 무선충전 매입콘센트, 주방 상판 하부 LED조명, 독립형 후드 ※인덕션 필수선택	59BL	8,000,000	1,600,000	6,400,000	
			59BH	8,300,000	1,660,000	6,640,000	
	선택4	세라믹타일 대형 아일랜드+세라믹타일 벽/상판 마감재+플랩장(매립형 상하부조명), 무선충전 매입콘센트, 주방 상판 하부 LED조명, 독립형 후드 ※인덕션 필수선택	59BL	11,900,000	2,380,000	9,520,000	
			59BH	12,200,000	2,440,000	9,760,000	
슬라이딩 붙박이장		침실2	55㎡ 전타입, 59BL, 59BH	1,800,000	360,000	1,440,000	
		침실3	59㎡ 전타입	1,800,000	360,000	1,440,000	
욕실 스타일업	공용 욕실	욕실 벽/욕조에이프런 대형 포세린타일, 디자인욕실장+간접조명, 수납형 욕조수전, 니켈 무광 수전 악세서리, 복합환풍기, 청소수전	전타입	1,800,000	360,000	1,440,000	
	부부 욕실	욕실 벽 대형 포세린타일, 캔버스 샤워수전, 디자인욕실장+간접조명, 수전/악세서리/샤워부스 니켈 무광, 복합환풍기, 청소수전	전타입	2,200,000	440,000	1,760,000	
드레스룸 특화	화장대 통합형 : 드레스룸 벽판넬 조명형 선반, 디자인 파우더장, 슬라이딩도어		55㎡ 전타입, 59AL, 59AH	1,300,000	260,000	1,040,000	
			59BL, 59BH	1,200,000	240,000	960,000	
			59CL, 59CH	1,000,000	200,000	800,000	
조명특화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라인조명, 거실(아트월면), 단천장+간접조명, 주방 마그네틱 트랙조명		55㎡전타입, 59AL, 59AH 59CL, 59CH	2,500,000	500,000	2,000,000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라인조명, 거실(아트월면), 단천장+간접조명		59B 전타입	1,400,000	280,000	1,120,000	

▪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 및 비율	사전청약당첨자	계약시 (20%)	입주지정일 (80%)
	사전청약당첨자 외(신규신청자)	계약시 (20%)	입주지정일 (80%)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빌트인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가구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미선택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설치 할 수 있는 장이 제공되며 가구 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미선택시, 일반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장에 비하여 다소간 튀어 나올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오브제 빌트인 냉장고는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오브제 패키지 마감사양은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평면선택 옵션에 따라 마감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해서는 평면옵션 비용 산출 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 III)은 향후 현장 여건 및 시공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공지)할 예정임.

※ 본 공고문에 미기재된 내용은 추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안내 후 계약합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및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공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발코니 확장비(계약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추가선택품목 비용(계약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각 대금은 반드시 지정된 해당 가상계좌로 분리하여 입금하셔야 하며 (교차 입금 및 합산 입금 불가), 오입금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전 항목별 계좌번호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개별 지정 된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공통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창호, 바닥재, 벽, 천장, 조명기구, 욕실기구, 주방가구 등)에서 계약자가 직접 일괄 신청시 해당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선택은 불가합니다.)

▪ 품목상세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문선,목재공틀 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실외기실 문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 내·외부 PL창호, 주방 터닝도어, 실외기그릴창, 디지털도어록(현관)
② 바닥	강화합판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방수(방수 시공부위만 해당),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경량벽체(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온도조절기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장, 등박스, 반자돌림, 환기 디퓨져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세대 환기덕트, 스피커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인조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상콜,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배선,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렌지후드,음식물탈수기),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 포함)	석고보드, 소방관련 시설(자동식 소화기 등), 기계설비 배관(가스배관 포함), 배기덕트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⑧ 일반가구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⑨ 기타	발코니 및 세탁실 수전류	기계설비 배관, 에어컨 냉매배관(기본 제공 설치위치), 세대 환기장치(전열교환기), 스프링클러 및 하향식피난구 등 소방관련시설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주택전시관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원)

타입	55AL	55AH	59AL	59AH	59BL	59BH	59CL	59CH
공급금액 기본선택품목 금액	29,564,000	29,980,000	31,582,000	32,085,000	31,566,000	32,032,000	31,523,000	32,010,000
발코니 확장비 기본선택품목 금액	914,000	913,000	971,000	974,000	962,000	963,000	472,000	473,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세대별 공급금액(분양가)에서 상기 공급금액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에서 상기 발코니 확장비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발코니 확장비로 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 및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 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 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바닥난방배관 및 방수층 훼손 시 하부 세대 누수 피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시공 세대에 있으며, 세대 분전반 및 홈네트워크 배선 임의 개조로 인한 공용 통신 장애 발생 시 복구 비용이 청구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시행자 시공분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부장 및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가스쿡탑은 가스관련 규정 개정으로 과열방지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시설물(자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공사(렌지후드 등)는 사업주체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미준공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으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됩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분양가격이 총

자산기준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포함)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포함)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사업주체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Ⅱ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시흥거모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시흥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경기도·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선정 단계별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1) '25.11.06.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2) '25.11.06.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지역우선 공급기준**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11.06.)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흥시)	30%	· 공고일 현재 시흥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5.11.06.**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흥시 거주 (**2025.11.06.**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6.05.06.**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026.05.06.**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시흥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선정 단계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시흥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6.12.08.)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

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됨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본청약(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청자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 **검토대상** :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당첨자는 신청 시 입력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모두로 세대를 구성하고 입주 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총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총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 현재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중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에 따라 조사기준일(통상 당첨자 서류 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 말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는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중요) 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조회·산정하며, 조회 과정에서 자산 항목의 성격에 따라 데이터가 중복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집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감 처리가 불가하므로 본인의 자산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자산 가액 신청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총자산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의 차액**으로 검증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인출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되며,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퇴직 전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여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3> 총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3> 총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상기 3. 총자산보유판정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h></tr>
<tr><td rowspan="2">①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3">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62,000천원
이하</td><td>건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건 물</td><td>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r><td colspan="2">시설물</td><td>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r><td>②금융자산</td><td colspan="2">•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기준일 당시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사기준일 당시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td></tr>
</table>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상기 3. 총자산보유판정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개인형퇴직연금(IRP)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③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④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⑤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 - 마이너스통장 또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유동성 한도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며, 카드론(장기카드대출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카드론 대출액을 소명할 경우 부채로 인정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관련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① 부동산(건물+토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97,000천원 이하**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431,000천원 이하**	<표3> 총자산보유기준 참고
② 금융자산			
③ 기타자산			
④ 자동차			
⑤ 부채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4년식 자동차를 2023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본청약(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청자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 **소득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일반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우선) 배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5,273,634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7,745,37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추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10%**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20%**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 각 공급유형별 세부 가구원수 적용 기준 및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인정하지 아니함.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위 '**가구원수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Ⅲ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0. 공통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부적격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9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별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합니다.**

1. 사전청약 당첨자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상속의 경우 제외)**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사전청약 신청 당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6.11.06.)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시흥시 1년 이상)을 충족**하였거나,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 해당지역 전입일~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1)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3)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음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9.)**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당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시흥시 1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유지여부,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특별공급 기당첨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2026.11.06.)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11.16.(월) 10:00 ~ 11.17.(화) 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삼성패스 등)으로 로그인 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 → (접수 후)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확인 → 본청약 신청 포기 시 "포기 신청" 필요 (청약 일정 확인)**

-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신청서 작성 시 주택형(타입)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선택(중복선택 불가) 해야 합니다. 주택형(타입)은 각 선호순위 순(1순위→2순위)으로 LH 전산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됩니다. (본청약시 선택가능한 주택형이 1개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 필요)

사업지구	블록	사전청약시 당첨된 주택형	본청약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	발코니 확장 여부
시흥 거모	A-6블록	55㎡	055.0000A	발코니 확장형
		59㎡	059.0000A	발코니 확장형
			059.0000B	발코니 확장형
			059.0000C	발코니 확장형

- 국토교통부의「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개정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신청 시 당첨된 주택형 내의 타입에 대해 선호 순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호 주택형(타입)에 경쟁이 있는 경우 선호순위 순(1순위→2순위)으로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배정됩니다.
 *55형의 경우(055.0000A) / 59형의 경우(059.0000A, 059.0000B, 059.0000C)
- 사전청약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형(타입)을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청약 신청 포기 기간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을 하여야 하며, 본청약 신청 포기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합니다. 본청약 신청 포기 시 청약통장은 사용처리되지 않으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본청약 신규신청자) 및 타 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확인 : 2026.11.19.(목) 14:00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분양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조회)**
 - **본청약 신청 취소 기간 : 2026.11.20.(금) 10:00 ~ 17:00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분양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조회 → 포기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를 하셔야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본청약(신규신청자)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유의사항**

- **중복신청 금지**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11.16.(월) 10:00 ~ 11.17.(화) 17:00**]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신규신청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복 신청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11.16.(월) ~ 2026.11.17.(화)**]에 미신청한 경우와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포기한 경우, 본청약 신청(신규신청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LH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해당 본청약 **당첨시 당첨자발표일[2026.12.08.(화)] 이후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됩니다.**
 ※ **사전청약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시에는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2.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11.06.~2026.11.06.에 속한자)**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4페이지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12페이지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13페이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14페이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3.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4페이지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12페이지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13페이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14페이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4페이지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12페이지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13페이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14페이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5. 입주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8> 우선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우선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① 70% 이하	3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2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초과 110% 이하
	③ 100% 초과	1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미거주(0점) 선택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미거주(0점) 선택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가구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입주예정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가구소득은 14페이지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14페이지<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6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9> 일반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9> 일반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① 3명 이상	3	• 태아(입양) 포함
	② 2명	2	
	③ 1명	1	
	④ 0명	0	
(2) 무주택기간	① 3년 이상	3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공고일 현재 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0점) 선택
	② 1년 이상 3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해당없음	0	
(3)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미거주(0점) 선택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미거주(0점) 선택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미성년자녀수 입력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수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직계비속)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태아)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무주택기간**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10페이지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참조)
-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한부모가족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2)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으로 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순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IV 신청 시 확인사항(재당첨제한,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 조회기준일 입력→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등)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6.12.08.)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LH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LH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 제3호)	10년간

4.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공공분양)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견본주택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변경 및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LH에서 당첨자 선정 후 주택형(타입)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본 블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	**2026.11.16.(월) 10:00 ~ 2026.11.17.(화)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6.11.26.(목) 10:00 ~ 2026.11.27.(금) 17:00**		

※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 본 단지의 경우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타입)별(개별 세부평형 선택 불가)**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청약(신규신청자) 신청자는 각 주택형(타입)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타입)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형(타입) 선택 기간까지 제출 완료)**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받으시거나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삼성패스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6.11.27.(금) 오후 8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 신청방법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거나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삼성패스 등)을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당첨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삼성패스 등)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 → (접수 후)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확인 → 본청약 신청 포기 시 "포기 신청" 필요**
- **본청약(신규신청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삼성패스 등)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 선택 → 주택형(타입) 선택 → 신청유형(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기간 : (사전청약 당첨자) 2026.11.16.(10:00) ~ 2026.11.17.(17:00) , (본청약 신청자) 2026.11.26.(10:00) ~ 2026.11.27.(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청약 신청 포기 기간 (2026.11.17.(화) 10:00 ~ 17:00)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 필요) 하시기 바랍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시흥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시흥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수도권)"**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엄격하게 처리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가입기간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 조회방법(**반드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용'으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신혼부부 특별공급용)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Ⅶ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선정, 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선정**

- 추첨 일시 : **2026년 11월 19일(목)** 11:00
- 추첨 내용 ①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 주택형(타입) 선정 참관을 원하는 분은 대표번호(☎ 1661-5596)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추첨 참관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6년 12월 08일(화)** 11:00
- 추첨 내용 ① 공공분양주택 및 행복주택(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의 동·호수
 ②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동·호수

※ 주택형,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대표번호(☎ 1661-5596)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추첨 참관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방문제출	선택품목 결정	계약체결(당첨자)
'26.12.08.(화) 14:00 이후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6.12.11.(금) ~ 12.17.(목) 10:00~16:00	추후 일정 통보 예정	'27.03.11.(목) ~ 03.14.(일) 10:00~16:00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시흥 거모 아테라 주택전시관 (주소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24-2 ☎ 1661-5596)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6.12.11.~2026.12.17.**)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방문 제출

■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기관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필수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②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③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필수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사전청약공고일(**2021.12.29.**)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수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모두 발급	행정복지센터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나·청약플러스
⑦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해당자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기관
①당첨자 본인 신분증		필수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②주민등록표등본(상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③주민등록표초본 (전부포함)		필수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④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⑤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행정복지센터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⑥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수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모두 발급	행정복지센터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나·청약플러스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기관
⑧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해당자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직장
⑨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	본인 및 세대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해당병원
⑩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⑪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사업주체에서 제공하는 양식) ※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포함	-
⑫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해당자	세대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⑬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복지센터
⑭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재외국민 배우자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을 제출	행정복지센터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계약체결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현장수납불가)** * 주택공급금액 및 발코니확장비용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추후 별도로 진행 예정)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③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온라인 발급의 경우 기입필요: 발급기준(본인발급) / 발급용도(아파트 공급계약 용) / 제출처(금호건설)
		④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가능)
		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위임장 (공고 시에 첨부된 양식)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②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신분증(고령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도시기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계약금 포함)을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법」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로 서면통보(우편, 인터넷, 팩스)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LH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자후불제 대출안내**] (중도금 대출 협약체결에 따라 대출이 실행 될 경우 이자 납부 방법 안내입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계약시,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입주자가 입주지정기간 중 입주 시 우리 공사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대납 이자를 입주지정기간 중 미납 시 입주지정기간 말일부터 연체기간에 따라 미납금액에 연체이자(현행 연7.5%, 변동 가능)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원할 시, 주택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일정 등 세부계획은 기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개인의 신용불량 등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이 불가한 경우나 **개인사정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융기관 선정 불가할 경우 본인자금**으로 직접 해당 납기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이율(현행 연7.5%, 변동 가능)이 가산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 시 발생하는 제부담금(인지대 및 주택보증수수료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하더라도 입주 시 대출한 중도금은 본인자금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자는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에 해당하는 전용대출상품에 가입해야하며, 이 때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동시에 수용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 잔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지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연 5.0%(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월 최초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주택도시기금은 입주시점에 별도로 계좌를 안내할 예정이므로 분양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 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 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융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사전당첨자의 경우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분양대금의 중도금 범위 내에서 20%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 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 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LTV에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제공대상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주 방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야간센서등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의 경우 현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2027.03.11.~2027.03.14. 10:00~16:00**)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신분증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공통 유의사항**

공통	지구 여건	• 청약 전 지구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66(2026.02.06.)호로 승인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향후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시흥거모지구는 단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포함), 제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교육), 에너지 사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기반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추진일정 및 사업준공이 연기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에는 공공(장기)임대, 민간분양, 민간임대, 주상복합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개교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고, 입주시 지구 내 학교 개교 지연될 경우 사업지구 인근학교로 배치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공공청사용지, 주차장, 업무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관련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남북을 가로지르는 제기천(소하천)과 홍수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시설 4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의 위치, 규모 등은 제영향평가, 인·허가 변경,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구내 계획된 하천(제기천)의 경우 입주시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수량, 수질에 따라 지구내 하천정비 이후에도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량이 적을 수 있음 • 본 사업지구 내 3개소의 오수중계펌프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구외 오수차집관로를 신설하여 지구 외부 하수처리장(시화공공하수처리시설(시흥물환경센터))에서 처리할 계획이나 지자체 협의, 공사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구외 오수차집관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처리방안 등으로 인해 지구내 일부 구역에서 악취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남측에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중이며, 해당 사업의 영향으로 본 지구 지구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천, 공원.녹지, 학교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거 본 사업지구 주변으로 도로신설 및 확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도로사업은 본 사업지구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여건에 따라 주민입주 이후에 도로가 개통될 수 있음 • 본 사업지구 경계 외측(서측 및 북측)에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이 위치하고 있고, 사업지구 외 구간 송전선로 및 철탑에 대한 지중화 계획은 없으며 LH 및 시공사에 지중화를 요청할 수 없음. 수분양자는 송전철탑, 선로, 방음벽 등 단지 외부구조물로 인한 조망 간섭 및 전자파 영향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업지구 서측으로 평택시흥고속도로(서시흥TG), 북측으로 영동고속도로(군자TG)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죽율~장현간 도로 입체화(고가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로등, 공원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지구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시 상담창구 및 계약 전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 및 구조물 계획을 확인 후 분양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명칭은 '시흥 거모 아테라'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펫네임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이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 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지면적 및 지분 감소에 따른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인허가 상의 사유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의 형태 및 위치, 마감,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및 축사·공장 등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table>
<tr><td></td><td></td><td>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후 단지 주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교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모형도의 단지 출입구 및 차량게이트 설치 위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설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음.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을 요하는 사항(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자재 선정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동의 및 승인에 대한 의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분양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주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음.
• 본공사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흙막이 등의 가시설 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 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일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설계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위치 및 면적, 개소, 형태 등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1. 아파트 단지명,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재활용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본 단지는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로 최초 입주시의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주체가 선정하고, 추후 분양세대가 과반수 이상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관리이관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LH)가 협의하여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주택을 운영·관리하게 됩니다. 관리이관 후,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주택사업자(LH), 임차인대표회의(구성시)가 상호 협의하여 단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양 계약자 및 임차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td></tr>
<tr><td></td><td>도로 및 기반시설</td><td>•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모형도 및 CG에 표현된 단지 외부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보행자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경사도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으며, 이로 인한 분양가의 변동은 없음.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외곽 일부 부위에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북측 및 동측 완충녹지의 경사도 및 계획고가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라 옹벽 등 경사극복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td></tr>
<tr><td></td><td>교육</td><td>•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당 단지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학생 배치 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계획되어 있는 학교시설(유, 초, 중)은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 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령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 시기 조정 및 설계계획 보류, 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지구 내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인근 학교 현황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학생배치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을 따름
• 시흥거모 A-6블록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가칭)거모2초등학교, 중학교는 2029. 3월 신설 예정인 (가칭)군자중학군(군자중, (가칭)거모1중(2029. 3월 개교 예정))으로 설정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은 향후 학생배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교육지원청 학생 배치 담당부서로 사전 문의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구의 학생 배치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흥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h>학교</th><th>위치</th><th>개교시기</th><th>해당교육청</th><th>비고</th></tr>
<tr><td>(가칭)거모2유</td><td>유</td><td>2029.03(예정)</td><td rowspan="4">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td><td rowspan="4"></td></tr>
<tr><td>(가칭)거모2초</td><td>초등학교</td><td>2029.09(예정)</td></tr>
<tr><td>(가칭)시흥특수학교</td><td>특수학교</td><td>2028.09(예정)</td></tr>
<tr><td>(가칭)거모1중</td><td>중학교</td><td>2029.03(예정)</td></tr>
</table>
• (가칭)거모2초등학교의 학생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남서측 출입구를 남동측으로 출입구 위치를 변경할 예정이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심의 결과에 따라 출입구 위치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td></tr>
<tr><td></td><td>분양홍보물 (카탈로그, 각종 광고지)</td><td>• 각종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현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변경)도면을 기준으로 표현하였음.
•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줄눈,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단지 시설물 등이 분양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분양홍보에 사용된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음.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분양가 미포함)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 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CCTV는 보안용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는 견본주택 소방 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설비는 인허가 기준에 따라 설치됨.
• 일부 평면의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 대비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시공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장, 주방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td></tr>
<tr><td></td><td>기타사항</td><td>•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견본세대로 이용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특화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분양계약체결 시 변경 수락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수락해야 함.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날개벽의 폭, 길이, 높이 등), 각동 출입구 등의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주차장, 문주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경비실 등)의 기초구조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td></tr>
</table>

■ 단지 유의사항

단지	공통사항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주변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으로 조망권 및 일조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특히 보육시설·관리동,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놀이터 등 시설물 인접 저층 세대 및 단지 외곽 보행로 인접 세대는 시선 차폐를 위한 블라인드/커튼 설치가 권장되며, 일조·조망 제한을 이유로 차폐 식재나 시설물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각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동별 필로티의 유무, 사이즈 및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발전기실 인접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주차장 출입구, 단지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문주,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경관에 해당하는 조명, 경관계획은 관할청의 규제사항에 저촉 또는 권고될 경우 계획이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음. •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내외 통로와 도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식재, 각종 외부조명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외벽에(동별 위치 상이) 벽부형 사인물 및 피뢰침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미관저하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 이동통신설비 안테나가 데크 주차장에만 계획되어 있으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수 있는 위치로 설치될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내 설치되는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부대복리시설, 대지내 공지, 소방도로, 생활폐기물보관소, 보행가로변 자전거보관소 등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파라펫 높이,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식재, 시설물, 재료 및 패턴 등의 포장계획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건물요철, 외벽몰딩, 장식물, 시설물, 조경 등에 의해 일부세대의 소음, 조망 및 일조가 침해될 수 있음. • 입주시 단지내도로,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한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 단지 내 CCTV 등의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경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됨.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장비(안테나, 중계기 등)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양호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 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동, 라인에 따라 속도, 인원, 층수, 대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 및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로 진입하는 비상차량 동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진입부가 경사로 계획되어 있으며, 경사지로 인해 차량 출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주출입구와 인접한 세대는 빛공해 및 소음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빛공해 및 소음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 발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 상 층간·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등의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 시 시공사의 현장별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임. • 공사 중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 발코니, 창틀, 색채디자인) 디자인을 포함한 단지 내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건축계획 또는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 등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단지 외부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보행자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경사도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건강친환경 주택 인·허가 지침사항에 따라 단지 주동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1층 세대의 경우 하층부(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및 휀룸, D.A 등 부대복리시설로 인하여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비상차량 및 이사차량, 입주자 차량 등의 운행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배치계획을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해야함. • 단지 오·우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 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보관소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인접 세대에는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보관소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인·허가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실 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변경 또는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거나 단지 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한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함.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이 불가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지하층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인접상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상가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고,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 됨.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천장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천장, 기둥 및 벽체 일부에는 각종 배관, 배선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옥외 비상시 소방용 안전매트 사용구간 장소에는 교목 및 관목이 식재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옥외공간에 수전 및 배수가 설치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와 배수 물막힘 현상 등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유지관리가 필요.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일부 하부세대의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 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 및 중간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각 층 계단실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1층~3층 사이 및 최상층에 각각 2개소가 설치됨에 따라 각 층별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 최상층의 승강로 피트내부에 엘리베이터 기계 구동부가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음. •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심의 및 인·허가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색채, 크기, 모양, 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천창, 주차장 환기구),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 및 아파트 PIT와 지하층 계단실, ELEV HALL 통행로에는 단열설계가 없으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PIT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본 건축물은 바닥에 층간소음 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 층간 소음재는 바닥충격음 경량1등급과 중량2등급 인정자재(자재시험성적서 기준)로 시공 예정이며, 실제 공사 후 시험 시 주변 환경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음. 단, 실제 준공 후 현장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는 측정 세대 위치 및 시험 환경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 개인별 체감 소음 수준에 따른 추가 하자보수 요구는 불가함. (사후 성능 확인제 법적기준인 4등급 이상을 충족할 예정임) • 단지 여건에 따라 저층 세대는 일조가 불리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도로의 폭, 선형 및 포장이 변경될 수 있음.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 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지연 발생 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음. • 추후 소방서 점검 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 중 샘플 세대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품질 향상을 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접 도로 개통 전, 단지와의 레벨 차이에 의해 옹벽이나 별도 구조물이 노출되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입주 후 개통 시 공사에 의한 소음, 먼지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의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에는 수목 식재가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인접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관련 법규의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조경면적 및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녹지면적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 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아파트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이 추가, 조정될 수 있음. • 입주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입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해야하며, 이에 따라 관리비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단지 외 주변 단지, 완충녹지, 도로 등의 면적 및 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출입구 일부 구간 보차혼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 시 내용 확인하시어 사고 발생에 유의하시고, 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 단지 내·외 시설물(문주,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시설, 경관조명, BI조명 등)에 의해 특정 세대가 자동차 전도등, 야간조명 등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필히 계약 시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타일 및 석재, 판넬의 경우 견본주택 설치를 위한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나누기도가 변경될 수 있음.
	조경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포장 등 포함), 바닥포장,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면적, 위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수량 등이 현장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수목의 종류, 높이 및 굵기 등은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수경시설 사용에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사항임.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운동시설 등 조경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 선형, 폭과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기탑 등 구조물의 크기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시설물,포장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입주자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조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문주	• 문주 형태, 높이, 폭,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 계획 및 외관개선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문주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음. • 문주는 단지 주출입구에 1개소 설치됨.
	시설물	• 휀룸,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법정수량에 맞춰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저층 일부 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동별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나 개수는 상이하며, 디자인 및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지하층에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됨. •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생활폐기물보관소, 드라이에어리어(DA), 천창,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미관저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바람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람. • 무인택배함은 동 지하1층 동별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 상 추후 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준공 후 하자보수를 위한 자재를 공용공간에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적치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계절창고는 각 동별 설치 개수 및 위치, 세대별 접근 동선과 이동거리 등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절창고의 배정은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크기 및 동별 개소 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 상에 표현된 지상 D·A(드라이에어리어)의 크기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생활폐기물보관소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인접 세대에는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조경공간 등 인근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지상 1층에 계획되어 있어 인근 저층부 세대에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북측 위치하고 있으며 추후 상가 분양 이후 평면,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PIT 등)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관리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에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커뮤니티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이며, 이에 따라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음. 본 단지는 공공분양과 통합공공임대 혼합단지로서 종합보육센터, 피트니스, 게스트하우스 등 모든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분양·임대 세대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며, 장기수선 충당금 및 일반관리비 분담 기준은 통합 관리규약에 따름. •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일부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실,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에 층간 소음 및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주차장	• 본 단지의 주차장 설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주차대수 (세대당)	구분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894 1.23대	**계**	-	-	-	**774**	**27**	**90**	**3**	-	-	-	-	-
	지상1층	-	-	-	-	-	-	3	-	-	-	-	-
	지하1층	-	-	-	337	13	90		-	-	-	-	-
	지하2층	-	-	-	437	14	-	-	-	-	-	-	-

* 장애인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및 배관, 환기장치(유도휀)가 노출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 및 벽체 일부에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구조 형식상 지하층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 채광용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본 시공 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으므로, 향후 관련법 개정 및 개인/단체에 의한 추가요구가 불가능함.) •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45대(9대는 급속충전기, 36대는 완속충전기), 친환경주차면 45대(콘센트) 설치되며, 현장 여건 상 추후 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 동으로부터의 접근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음. 주차장의 위치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천장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차로 유효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임) • 주차장 및 아파트 PIT와 지하층 계단실, ELEV HALL 통행로에는 단열설계가 없으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PC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PIT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엔 집중호우를 대비한 차수판이 계획되어 있으며, 집중호우 발생시 차수판이 설치될 경우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이 어려울 수 있음. • 609동 인근에 아파트 전기실 및 발전기실, 저수조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시스템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CCTV,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설치되는 CCTV는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배치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음. 본 단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으로 옥상에 대용량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최상층 세대에 일조 반사광(눈부심) 및 인버터 작동 시 미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설비 점검을 위한 유지보수 인력의 옥상 출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 양지하여야함.

■ 세대 유의사항

세대	**공통사항**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2.3M(1층세대는 2.4M)이며, 실시공시 법정 허용한도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가구, 주방가구, 붙박이장, 수납가구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의 월패드,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주방상판 가스배관 타공 등)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은 세대별로 상이하고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거실(스텐딩)과 침실1(벽걸이)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이 실외기실까지 설치 되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설치되지 않음. 기본 시공되는 실 외에 별도 실내기와 실외기 설치시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불편 및 실외기의 열기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중앙 공급 방식이 적용됨. • 현관, 발코니의 경우 비난방공간 임.(욕실은 욕조,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하부 공간은 바닥 난방 시공 제외)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됨.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 품목(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전열교환 환기방식으로 기계환기 설비가 적용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천장 혹은 발코니 천장에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고,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음. • 일반 냉장고 설치 시(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돌출될 수 있음.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관련규정에 의거 침실벽 등 노출된 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중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별도의 IP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휴대폰 제어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등)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 전 타입의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설치)에는 물건을 적재할 수 없으며, 물건 적재시 피난활동에 방해유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피난공간(하향식피난구)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공사 및 사업주체는 책임이 없음. • 침실1 앞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세대당 1개소 설치(위·아래층 교차 시공)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지상1층 제외). 단 필로티 상부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아닌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용 에어컨 냉매박스는 플라스틱 마감카바로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냉매박스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및 욕실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각 세대의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됨.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환기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제어부 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옵션에 따라 난방조절 개소, 위치, 수량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욕실 천장에 설비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크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욕실 천장에 상부세대의 급수, 급탕배관용 분배기박스가 설치되어 상부세대의 누수상황 발생시 점검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수 있음.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음. • 세대 내 동체감지기가 설치 됨.(아파트1~2층 및 최상층의 경우는 발코니 및 거실등에 설치되며,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음. • 홍보물등에 명시한 IoT, 홈네트워크 관련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선시공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각실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음.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 시 견본주택에 구현된 제품의 위치 및 색 등이 상이 할 수 있음. • 기본제공형 욕실환풍기와 유상옵션 복합 환풍기의 설치위치는 기능상 이유로 설치위치가 상이 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 덮개 상부 및 주변 반경 이내에는 고정식 선반, 세탁용품 등의 적치가 엄격히 금지되며 소방서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함
	창호	• 외부 창호 색상,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풍압검토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현관방화문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카탈로그를 참고)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함.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각 평형별 유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차별화마감 적용시, 별도마감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와 색상이 마감을 위해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사업주체가 임의조정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 • 세대 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덕트/PIT 공간은 임의로 벽체를 철거하여 불법으로 확장할 수 없음.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에 관한 기준」 제8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침실 및 욕실 문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시공될 예정임. • 세대 대칭형 타입의 경우, 분양 홍보물 대비 일부 각 실의 향,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 세대 배치, 코아 형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본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우물천장, 커튼박스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마감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가 사용될 경우, 자재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미사용시 해당없음) • 천연석이 사용될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뒷선반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음. 재료의 접합연결부가 발생하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주방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 없음.(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주방 및 일반가구, 시스템선반, 현관방화문, 마루, 타일 등)은 본 공사시 업체선정 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거실 우물 천장 및 각실의 커튼박스의 크기는 스프링클러 및 환기 배관 등의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 됨.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공사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 될 수 있음. •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거울, 현관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천장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향상을 위해 도배홈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음. • 단지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 포함)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코킹의 위치 및 색상이 견본 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벽, 바닥, 현관바닥, 주방벽, 발코니바닥, 타일나누기 등 공사시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세탁기 전면부 덮개 개폐시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전면부 덮개가 90도이상 개폐되지 않을수 있음.
	유상옵션	• 유무상옵션 선택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에어컨 냉매매립배관박스와 전원콘센트는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이며 위치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함.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입주 이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옵션 선택으로 설치되는 면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유상옵션 품목 선택 이후 제품 특성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모델의 교체 또는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 없음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1Fix + 2연동 형태로 시공되며, 현관중문 미설치 시 벽체가 추가 설치되며 신발장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옵션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됨. • 빌트인 냉장고는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됨. • 식기세척기는 전면 가구판 마감이 설치됨. • 주방특화(인덕션) 옵션 선택 시 가스 배관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되고 주방용 가스배관은 미설치되고 이 경우 가스 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옵션 비용은 해당 금액이 반영된 금액임. • 주방특화 선택시 전기쿡탑(인덕션) 선택은 필수 조건임 • 천장형 제습기용 배수 드레인은 시스템에어컨/냉매배관 드레인에 혼봉하여 배수처리 예정이며, 일부 타입은 여건상 인근 욕실에 배수 드레인 처리 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유상옵션 선택결과에 따라 복합환풍기의 일부 기능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람.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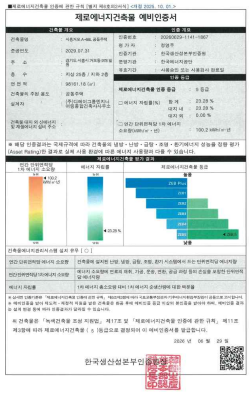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 관련 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 관련 등급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과대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토공사의 절토·성토량(땅깍기·흙쌓기를 위한) 최소화	해당없음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해당없음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해당없음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해당없음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해당없음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 환경 등급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주차공간 추가 확보	★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서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 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해당없음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 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 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 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 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미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7.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주택법」 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주택법 제5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구 분			총 액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1)	65,219,769
		기간이자(2)	1,687,637
		필요적 경비(3)	0
		그 밖의 비용(4)	69,863
		계	66,977,269
공사비(51)	토목(13)	토공사(5)	3,794,440
		흙막이공사(6)	0
		비탈면보호공사(7)	0
		옹벽공사(8)	0
		석축공사(9)	0
		우수·오수공사(10)	1,004,827
		공동구공사(11)	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12)	0
		도로포장공사(13)	0
		교통안전시설물공사(14)	0
		정화조시설공사(15)	0
		조경공사(16)	5,043,895
		부대시설공사(17)	0
		계	9,843,162
	건축(23)	공통가설공사(18)	3,656,275
		가시설물공사(19)	1,140,663
		지정 및 기초공사(20)	2,616,761
		철골공사(21)	0
		철근콘크리트공사(22)	38,439,549
		용접공사(23)	0
		조적공사(24)	1,916,408
		미장공사(25)	1,978,286
		단열공사(26)	0
		방수·방습공사(27)	1,370,646
		목공사(28)	2,409,312
		가구공사(29)	1,189,585
		금속공사(30)	606,609
		지붕 및 홈통공사(31)	185,717
		창호공사(32)	3,537,598
		유리공사(33)	1,112,532
		타일공사(34)	1,975,765
		돌공사(35)	215,613
		도장공사(36)	1,135,059
		도배공사(37)	640,439
		수장공사(38)	1,138,557
		주방용구공사(39)	793,059
		그 밖의 건축공사(40)	6,222,623
		계	72,281,056
	기계설비(9)	급수설비공사(41)	3,656,425
		급탕설비공사(42)	3,199,372
		오수·배수설비공사(43)	3,293,669
		위생기구설비공사(44)	1,580,602
		난방설비공사(45)	673,143
		가스설비공사(46)	263,177
		자동제어설비공사(47)	43,812
		특수설비공사(48)	0
		공조설비공사(49)	0
		계	12,710,200
	그 밖의 공종(4)	전기설비공사(50)	10,669,021
		정보통신공사(51)	4,978,219
		소방설비공사(52)	7,951,688
		승강기공사(53)	864,972
		계	24,463,900
	그 밖의 공사비(2)	일반관리비(54)	4,576,475
		이윤(55)	0
		계	4,576,475
간접비(6)		설계비(56)	1,552,782
		감리비(57)	1,069,969
		일반분양시설경비(58)	1,441,882
		분담금 및 부담금(59)	0
		보상비(60)	0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61)	2,034,997
		계	6,099,630
그 밖의 비용(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62)	35,153,579
합계			232,105,271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나라감정평가법인	나. ㈜제일감정평가법인
65,219,769천원	64,692,953천원	65,746,585천원

9. 분양주택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단위 : 천원]

항 목			금액
택지비 가산비	기간이자		1,687,637
	감정평가수수료		69,863
	계		1,757,500
건축비 가산비	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		972,780
	법정초과복리시설설치비용		3,989,402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홈네트워크	3,335,963
		초고속통신특등급	569,823
		에어컨냉매배관	791,537
		기계환기설비	1,069,396
	친환경주택건설비용		2,068,200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시설	209,980
		기타비용	127,234
	지하주차장층고증가추가비용		301,448
	설계비		186,333
	감리비		4,478,543
	기초지반공사비	말뚝박기공사비	5,195,767
		흙막이및차수벽공사비	6,601,587
	안전관리비		589,702
	사업승인부가조건 가산비		4,665,884
	계		35,153,579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 회사
시흥거모 A-6BL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금호건설㈜ (104-81-31309) 한신공영㈜ (114-81-04605) 리바이브개발㈜ (138-81-77458)	금호건설㈜ (104-81-31309) 한신공영㈜ (114-81-04605) 리바이브개발㈜ (138-81-77458)	-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계약금 : 8,358,500,000원

11.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시흥거모 아테라 견본주택 찾아 오시는 길



■ **위치안내**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24-2**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 **관람기간** : '26.11.06.(금) ~ '26.11.18.(수)
※ 운영기간 내 주말, 공휴일 방문 가능합니다.
※ 운영기간 및 시간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10:00~17:00

사이버 주택전시관 [PC · 모바일]	분양문의
■ 주 소 : **http://arterashgm.co.kr**	■ **시흥거모 아테라 주택전시관 : 1661-5596** (10:00 ~ 17:00)